

제289회 시의회 임시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- 일 시 : 2019. 8. 29.(목) 10:00
- 장 소 :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

기 후 환 경 본 부

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현재 운영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기간이 2020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계획을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고드립니다

□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폐기물시설축진법」 제30조제2항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
- 「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」 제35조제3항(권한·업무의 위임 등)
-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○ 필요성

-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발생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로써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며,
- 폐기물을 안전하게 반입·처리하고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관리·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에게 위탁 운영 필요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
- 소각, 환경, 발전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·보수
-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·판매
-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
- 양천녹색환경교육센터 관리
-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, 용역, 물품 등 계약·관리 일반사무 처리
-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

라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양천자원회수시설
- 시설위치 : 양천구 안양천로 1121(목동)
- 부지면적 : 16,914.1 m^2
- 시설규모 : 생활폐기물소각시설 400톤/일(200톤/일 × 2기)
- 처리권역 : 양천구, 강서구, 영등포구
- 주 용 도 :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
- 주요장비 : 소각설비, 재처리설비, 연소가스냉각설비 등

마. 위탁기간 : 3년(2020. 4. 1. ~ 2023. 3. 31)

- 민간위탁 추진 현황
 - 1차 : '96.03.01.~'99.03.31.[3년, SK건설(주)]
 - 2차 : '99.04.01.~'02.03.31.[3년, SK건설(주)]
 - 3차 : '02.04.01.~'05.03.31.[3년, 한국시거스(주)]
 - 4차 : '05.04.01.~'08.03.31.[3년, 한국시거스(주)]
 - 5차 : '08.04.01.~'11.04.30.[3년, 한국시거스(주)]
 - 6차 : '11.05.01.~'13.12.31.[3년, 한국시거스(주)]
 - 7차 : '14.01.01.~'17.03.31.[3년, 한국시거스(주)]
 - 8차 : '17.04.01.~'20.03.31.[3년, 한국시거스(주)]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사. 소요예산(예산) : 4,158백만원/년

- 산출근거 : 3,960,320,000원('19년 위탁비)×1.05(임금상승률)
※ 임금상승률 : 최근 3년 해당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상승률

아. 기대효과

-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
- 전문적인 시설 운영·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폐기물시설축진법」 제30조제2항

제30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

-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폐기물시설축진법 시행령」 제35조제3항

제35조(권한·업무의 위임 등)

-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2. 30.> 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.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(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[전문개정 2009. 6. 16.]

○ 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3.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,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, 자원회수시설을 설계·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